

〈서식-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필수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는 위 항목에 체크

면 제 대 상 자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E-mail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출발국가·공항	출발일		
격리제신청유사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제출 서류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주미국대한민국대사 귀하

접 수 자	(주미국대사관)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8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입국단계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 검사를 받고 8일 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즉각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입소비용 자부담)격리 조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공무출장의 경우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3.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주미국대한민국대사 귀하

〈서식-3〉 서약서

본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허위제출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취소되며,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제11조, 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가 위변조, 허위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주미국대한민국대사 귀하